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배 의원입니다.
- 이렇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국내 여행·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한편, 차량을 이용한 캠핑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